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6. 20. 민홍철의원 등 11인

나. 회 부 일 자 : 2024. 6. 21.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4.8.23.)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1.19.)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5차 전체회의(2025.11.26.)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및 주요내용

(민홍철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입수용자에게 미성년 자녀 보호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수용자의 자녀 보호 신청이 있을 경우 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일부 수용자는 미성년 자녀와의 접견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기초적인 실태파악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조사의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수용자와 미성년 자녀와의 원활한 접견을 위한 지원을 명시하고,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보호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법무부의 2021년 전수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규모가 적지 않고, 이들 중에는 안정적인 양육 환경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비추어, 미성년 자녀가 수용자의 형 집행기간 중 안전하게 보호·양육받을 필요성이 있고, 수용자

가 형 집행종료 후 사회 복귀시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가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미성년 자녀와의 접견 등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수용자와 미성년 자녀간 원활한 접견을 지원하고, 미성년 자녀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임.

먼저, 소장이 수용자와 미성년 자녀간 원활한 접견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한 안 제53조의2제3항을 보면, 현행법은 미성년 자녀와 접견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제41조제3항)에 그치고 있지만, ①주로 학령기인 미성년 자녀가 학업으로 평일 접견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주말 접견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 ②자녀가 수용자 부모에 대한 위화감·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대면 및 화상 접견시 일상복 환복을 허용하는 방안 등 장소적인 측면 외에도 원활한 접견을 위해 추가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장에게 접견 지원 의무를 부여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음으로, 법무부장관이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안 제53조의2제4항은, 개정안을 통해 정기적 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수용자의 가족관계와 지원 대상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관리

및 지원 방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역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다만, 체계·자구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개정안에서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으로 표현한 부분은 제53조의2의 조문제목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의 법문상 표현만으로는 그 개념이 다소 모호하고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제53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지원을 지칭하고자 한 취지를 명확히 하여 안 제53조의2제4항 중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을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김용민위원)

소장이 신입자 자녀의 양육환경을 조사한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수용자와 자녀간 원활한 접견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법무부장관은 자녀가 있는 수용자가 수용될 교정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자녀의 주거지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하

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